

COVID -19 Newsletter

April 22, 2020

COVID-19 : 공연문화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분쟁 전망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라고 합니다)의 급속한 확산(이른바 ‘코로나 사태’)으로 인해 산업생산·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계도 코로나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바, 특히 COVID-19 확산 예방조치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관객 등이 일정 장소에 밀집하여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공연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공연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면서 공연 기획자, 출연자, 스태프, 공연장 등 공연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공연계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용품,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고, 공연 관람 할인권 제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연업종에 대해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공연의 취소나 연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공연 종사자들 사이의 법률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사태가 공연 취소 등에 있어 어떤 법률효과를 가지는지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전망을 통해 공연 종사자들의 대처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연 행사 취소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불가항력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불가항력의 의미를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등). 통상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예로는 천재지변, 전쟁을 들 수 있고, 광의적으로는 파업까지도 불가항력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불가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인지 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따지고 있어 해당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 불가항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법원이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고 그 감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정은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사정이요, 또한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2020. 2. 22.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 행사가 일반적으로 밀집된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권고는 합리적인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위와 같이 요청한 상황에서 이에 반하여 공연 행사를 원래 예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사태는 개인이나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 기획자 등이 COVID-19의 확산 및 정부 차원의 행사 자제 요청을 고려하여 공연을 취소하게 된 사정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 확산이나 정부의 권고를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일의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반대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연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상 관객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다거나, 공연장이 소규모이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전염병의 감염 우려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어야 하므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기획된 공연으로서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 내에 예정된 공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결국 코로나 사태가 공연 행사 취소 등에 있어 불가항력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해당 공연 행사의 내용과 성격, 규모, 예정 장소, 공연 기획 및 예정 시기, 관객에 대한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계약서에 질병 또는 전염병 등을 불가항력의 일종으로 포함시켰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이 불가항력인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의 실무적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논의 결과가 법원의 판결이나 분쟁의 해결 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공연 행사 취소에 따른 법률 분쟁 전망

1.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해결

-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됩니다.
- 또한 불가항력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당사자는 계약조항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인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2. 소비자와의 법률 분쟁 전망

- 코로나 사태로 공연 행사가 취소되고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공연 기획자 측은 소비자에 대해 공연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며, 티켓을 판매하여 미리 입장료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환불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를 환불받는 이외에 공연 기획자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소비자가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i) 공연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ii)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 환급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출연자, 스태프와의 법률 분쟁 전망

-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취소되고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 기획자 측과 출연자(또는 스태프) 사이의 법률 관계는 소비자와의 법률 관계의 경우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출연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불가항력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해결될 것이지만,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출연자는 공연 기획자에 대하여 출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반면 그 반대급부인 출연료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출연자에 대한 섭외 직후 또는 본격적인 준비 이전에 공연 취소가 결정된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오고 간 급부가 없기 때문에 출연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해제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만약, 그 출연자가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계약서상의 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고, 계약금 조항이 없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공연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는 공연 연습 등에 참가한 출연자들을 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 기획자와 출연자가 고용관계인 경우 공연 취소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단발적인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출연계약의 경우 연습 등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보수(이른바 ‘연습페이’)를 받고, 이후 실제 공연 출연 횟수에 따라 회당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무상으로는 공연 취소 당시까지 지급된 보수의 수수로서 출연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하게는 계약 해지 내지 해제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을 따져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즉 출연자로서는 단순히 연습페이의 수수가 아니라 전체 공연에서 자신이 공연 취소 시까지 투입한 급부의 비율을 전체 출연계약 금액에 적용한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정산금의 요구가 계약해제 따른 정당한 원상회복 청구인지, 불가항력에 따른 것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다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공연장 대관 관련 법률 분쟁 전망

-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취소되었고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장을 임대한 자는 공연 기획자에게 대관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관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공연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관 기간, 취소 시점으로부터 남은 사용예정일 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3달 이내의 임박한 취소의 경우 전액 물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연 취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공립공연장 및 세종문화예술회관 등은 위약금 없이 대관계약을 취소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연장이 먼저 대관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을 것인바, 만약 그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면 공연 기획자 측도 공연장 측에 대해 대관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최근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으나, 공연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장 측으로서는 공연 기획자 측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공연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연 기획자가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공연 취소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해 공연장 측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대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연장 대관의 경우 대관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대관계약 취소에 따른 법률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대관계약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나 출연자와의 법률 관계의 경우보다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계약의 경우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취소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등을 통해 취소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박교선
파트너변호사

☎ 02-316-4233

✉ gspark@shinkim.com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 02-316-4055

✉ shim@shinkim.com



송재섭
파트너변호사

☎ 02-316-4349

✉ jssong@shinkim.com



송봉주
파트너변호사

☎ 02-316-1619

✉ bjso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